

(참 조)

건 의 문 (안)

지방자치의 공백기를 청산하고 전국민의 기대와 환호 속에서 지방의회가 새롭게 탄생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년이 된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 국가와 지방의 관계는 헌법상 지휘감독의 상하관계가 아니고 사무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서 협의 내지는 동의와 같은 협력, 협동의 관계에 있는 동등한 입장이며, 따라서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지방자치제의 이념과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가 위임한 기관위임 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는 당연히 국회가 감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위임 사무와 구분이 없고, 그 사무에 대한 행정책임도 역시 국가가 지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장이 쥐고 있으며, 국가위임 사무도 상당부분을 지방예산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가위임 사무와 고유업무 감사권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계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 자치단체는 감독원은 물론, 내무부를 비롯한 중앙관계부처의 감사, 그리고 자치감사에다가 지방의회의 감사를 추가하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 감사까지 가세할 경우, 자치단체는 행정 본연의 업무보다 연중 감사준비와 수감사무 관리에 여념이 없게 됩니다.

둘째 :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2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경우, 국민적 이해와 공감의 어려움으로 국회의 위상과 권위가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세계의 자치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부당한 일이라 판단
되오니 지방자치체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는 폐지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992. 10. .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원 일 동